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1. 15 선고 2019가단963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10. 30

판결 선고 2021. 1. 15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1/9지분에 관하여 2018. 6. 15.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이 사건부동산 중 1/9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. 12. 26. 접수제1533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지위

원고는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및 대여금을 E 주식회사를 거쳐 순 차로 양수한 채권자이다.

나. 상속재산 협의분할 경위

1) C의 부친 망 F은 2018. 6. 15. 사망하였는데,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/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.

2) 망 F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, G이 있었는데, 피고와 C, G은 2018. 6. 15. 망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피고 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(이하 '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'이라고 한 다)을 하였고,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F 소유인 1/2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 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. 12. 26. 접수 제1533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종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과

1) 신용보증기금은 C의 채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75798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/9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,피고로 하여 금 C에게 위 1/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,위 법원은 2019. 6. 21. '피고 는 2019. 8. 30.까지 신용보증기금에게 13,500,000원을 지급한다.

만일 피고가 위 지급 기일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 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/는 내용의 화 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, 당사자들이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 되었다.

2) 피고는 2019. 12. 3.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

13,921,643원(13,500,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지연손해금을 가 산한 금액)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4호증,을 제1내지 3호증(가지번호 모두포함)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항변 요지

피고는 종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 금에 게 13,921,643원을 반환함으로써 사해 행위 취 소에 따른 원상회 복을 모두 마쳤으므로,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.

나. 판단

1)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 닐 뿐만 아니라,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,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 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(대법원 2003. 7. 11. 선 고 2003다19558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 소와 종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모두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 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 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에 해당한다.

3)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즉 종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이유를 보면,피고가 신용보증기금에게 반환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'이 사건 부동산 공시가격,비슷한 주택의 실거래가, 별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통하여 추정해 볼 수 있는 C의 상속지분의 가치' 등이 고려된 점,이 사건 사해행위취 소 소송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로써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물반환 의무를 면하게 되기는 하나,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반환되더라도 채권자들이 위 건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 행절차를 통하여 환가하는 절차를 거쳐 그 대금에서 배분을 받아야 하는바,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고려한 가액을 반환한 이상 특정 채 권자와 통모하여

가액반환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반환 자체 가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,피고가 신 용기금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가액을 반환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 복을 모두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,

판사 강영기

별지